

의안번호	제70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702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 단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 : 2,118백만원

출연내역	예정금액	재원	비고
합 계	2,118백만원	국비 24%, 도비 76%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1,119백만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비	999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성·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중심적 역할 수행

3. 의안전문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기타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복지보훈팀	김경희	정영수	홍은선	3012

기관명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장 : 연명모 ○ 기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북대동,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규모 : 1개소(전용면적 379.8㎡) - 기관성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주된사업 :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조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운영 등 						
출연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118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액 (출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991	2,118	2,118	500	1,618	-	-
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지원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C등급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 시설 컨설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심리지원, 토론회,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종사자 보수 실태 조사, 돌봄모델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중임 * '23.6.1. 개원
-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기관 운영 필요
- 이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운영 예산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

3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내역	2024년 예산액(최종)(C)	2025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B-C)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991	2,118	2,118	-	127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2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전화번호 : 043-820-3601 홈페이지 : cb.pass.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등기('22. 11. 24.) 개원('23. 06. 01.)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현황 ('24.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8명	18명 * 별도 공무원 파견 2명	-
임원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상임이사	연명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비상임이사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혜정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이사
	"	변창수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	유응모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
	"	윤경미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이규하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임진숙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
	"	최현숙	충청북도학원장학회 이사장
	"	한규량	한국교통대학교 경영복지학부 교수
	"	최승환 (당연직)	보건복지국장
	감사	노동영	변호사
	"	김경희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운영 충북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출연금		100백만원	
그 간 예산지 원 현 황 ※설치비(국비 100%)	2022년	운영비	156백만원
		설치비	500백만원
	2023년	운영비	1,936백만원
	2024년	운영비	1,991백만원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2,118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 단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출연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출연액 : 2,118백만원
- 주요사업
 -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운영
 -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원법 제29조

□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재원
합계	2,118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1,119	5,180천원×18명×12월=1,119백만원 ※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제수당 등	국비 24% 도비 76%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비	999		

□ 기대효과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른 기관 운영 차질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